

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

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호 다목 1) 및 2)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자금융거래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)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2. 신용카드업 영위 가. ~ 나. (생략) 다.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1)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<단서 신설></p> <p>2)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<단서 신설></p>	<p>12. 신용카드업 영위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1)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. <u>다만, 전자금융거래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)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2)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. <u>다만, 전자금융거래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)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</u></p>

<p>3) ~ 8) (생략) 다. ~ 바. (생략)</p>	<p><u>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u> 3) ~ 8) (현행과 같음) 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